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 북 구
(지역경제과)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안 번호	187
----------	-----

제출년월일 : 2023년 10월
제출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공정무역 인식 제고와 공정무역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홍보 거점시설인 성북구 공정무역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2023.12.31)에 따라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 재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시설명	소재지(행정동)	시설규모	(현)위탁법인	위탁기간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개관:2016. 8.)	성북구 동소문로22길 33-8(동선동1가)	· 대지면적:108.3㎡ · 연면적:77.36㎡ · 1층 교육장 2층 홍보·체험관	(주)트립티	2021.01.01.-2023.12.31. (3년)

나. 위탁기간 : 2024. 01. 01 ~ 2024. 12. 31 [1년]

다.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사 및 선정

라. 위탁사무내용

- 공정무역센터 운영 및 사업 기획
- 공정무역 활성화 사업 추진(교육·홍보·생태계 조성 등)
- 위탁 대상 관련 시설물 관리 등

3. 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나.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5조(공정무역센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정무역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